

행정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행정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법원이 가해학생이 행정청의 처분 등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741호, 2023. 10. 24. 공포, 2024. 3.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의견청취의 절차, 방법,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하기 위하여 피해학생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피해학생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피해학생 등에게 의견의 진술을 갈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음(안 제10조의2제1항 신설)
-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을 한 행정청에 피해학생 등의 송달받을 장소나 연락처, 의견진술 관련 의사 등에 관한 자

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 법원이 피해학생 등의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로서, 피해학생 등이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피해학생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의 진술을 갈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학생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임시로 집행정지를 하는 경우, 그 밖에 피해학생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정함(안 제10조의2제8항 신설)

4. 행정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행정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에 따른 집행정지 시 의견 청취) ① 법원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을 하기 위하여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이 조에서 “피해학생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피해학생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피해학생등에게 의견의 진술을 갈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정지 결정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을 한 행정청에 피해 학생등의 송달받을 장소나 연락처, 의견진술 관련 의사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심문기일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당사자와 피해학생등에게 서면,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

시밀리 또는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그 심문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디오 등 증계장치에 의한 증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제1항 본문의 심문기일을 열 수 있다.

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를 퇴정하게 하거나 가림시설 등을 이용하여 피해학생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심문기일을 통지받은 피해학생등은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⑦ 피해학생등이 제1항 단서의 의견서 또는 제6항의 서면을 제출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에게 피해학생등의 의견서 또는 서면이 제출되었다는 취지를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또는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학생등의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해학생등이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2. 피해학생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의견의 진술을 갈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피해학생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임시로 집행정지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피해학생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⑨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청취한 피해학생등의 의견을 이용하여
피해학생등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를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10조의2(「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에 따른 집행정지 시 의견 청취)</p> <p>① 법원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 제1항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을 하기 위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이 조에서 “피해학생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피해학생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피해학생등에게 의견의 진술을 갈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p> <p>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정지 결정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을 한 행정청에 피해학생등의 송달받을 장소나 연락처, 의견진술 관련 의사 등에 관한 자료를 제</p>

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심문기일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당사자와 피해학생등에게 서면,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시밀리 또는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그 심문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제1항 본문의 심문기일을 열 수 있다.

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를 퇴정하게 하거나 가림시설 등을 이용하여 피해학생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심문기일을 통지받은 피해학생등은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⑦ 피해학생등이 제1항 단서의 의견서 또는 제6항의 서면을

제출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에게 피해학생등의 의견서 또는 서면이 제출되었다는 취지를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또는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학생등의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해학생등이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2. 피해학생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의견의 진술을 갈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피해학생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임시로 집행정지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피해학생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⑨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청

취한 피해학생등의 의견을 이용하여 피해학생등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피해자의 의견 청취)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으로부터 그 처분에 관한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1. 2. (생략)
-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

②·③ (생략)

제13조(피해자의 의견 청취) ①

-----.

- 1. 2. (현행과 같음)
- 3. -----
-----피
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②·③ (현행과 같음)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담당실	
연락처	(02) 3480 - 7631